



문서번호 공익제보-2014-0401

수 신 권오준 포스코 회장 귀하 (참조 최정우 포스코 정도경영실장)
손기진 포스메이트 대표이사 귀하 (참조 포스메이트 정도경영팀장)

발 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(담당 : 명광복 시민감시2팀장 02-723-5302 elle@pspd.org)

제 목 정진국 씨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포기 및 복직을 요구합니다

날 짜 2014. 4. 14. (총 2 쪽)

공익제보자인 정진국 포스메이트 직원에 대한 해고무효판정취소 행정소송 항소포기 및 복직을 요구합니다

.....

1. 귀 회장과 대표이사께서도 아시겠지만,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메이트가 직원이었던 정진국 씨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서 무효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,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인 포스메이트의 청구를 지난 4월 3일 기각하였습니다.
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(소장 신광식 박사)는 포스메이트를 비롯해 포스코그룹이 1심 판결을 곧바로 승복해 항소를 포기하고, 정 씨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. 참여연대는 회사 임직원들의 여러 비윤리 행위들을 회사내부 규정 등에 따라 포스코에 신고하고,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실적자료를 조작한 사실 등을 공익제보한 바 있는 정 씨에게 '2013 참여연대 의인상'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.
2. 판결문에는 포스메이트와 포스코그룹이 행했던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. 먼저 포스메이트는 정 씨가 2012년 1월 20일부터 한 달여 간 회사 내 임직원들의 비윤리 행위 등을 포스코에 신문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자, 신고 내용을 시정하면서도 정 씨를 도리어 질책해 고립시키고,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급기야 해고했습니다.
포스코의 잘못 또한 덜하지 않습니다. 정 씨가 정준양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보호 요청 이메일을 두 차례 보내자, 반복적인 이의 제기 이메일 발송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, 포스메이트에게는 직원 관리를 잘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.
3. 이에 참여연대는 귀 사들에게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구합니다.
먼저 사건의 원고인 포스메이트는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, 항소를 포기하고 정 씨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.
또한 포스코는 포스메이트사에 대한 지배주주로서 포스메이트에 정 씨 복직을 권고할 것을 요구합니다. 특히 정 씨는 포스코 신문고 시스템을 믿고 제보한 것인데, 포스코는 막상



공익제보자 보호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.

4. 혹시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자료조작 건을 내부고발한 자이기 때문에 조치를 주저하는 것이라면 이는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. 이미 이 사건은 공정위 등의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위 박탈 등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,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 시 출석한 당시 박기홍 포스코 당시 사장이 잘못을 인정한 사안입니다. 이렇다면 내부고발한 정 씨를 복직시키고 공익제보자로 대우하는 것은, 귀 사가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매듭짓는 길일 것입니다.
5. 만일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포스메이트가 항소를 감행한다면,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공익제보자 정진극 씨를 지원하는 시민행동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. 전향적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. 끝.

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·이석태·정현백

